당 진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람	기 관 의 장

제188호 2019. 02. 28.(목)

고 시

◦ 제2019-41호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

◦ 제2019-42호 도로명주소 고시 …… 3

공 고

◦ 제2019-27호 당진시 농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6

회 람						

발행 **당 진 시** (편집 홍보정보담당관 ☎ 350-3144)

당진시 고시 제2019-41호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166-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601, 소로1-601호)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이 변경 인가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6항 규정에 의거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02. 28.

당 진 시 장 

가.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별첨

나.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축척 1/1,200) : 변경있음

다. 당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 가능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601	10~30	국지도로	412	대로3-601 송악.기지시리 166-8	중로2-602 송악.기지시리 155-14	일반도로		충남고제16호 1998.02.23.	
변경	소로	1	601	10~31.6	국지도로	412	대로3-601 송악.기지시리 166-8	중로2-602 송악.기지시리 155-14	일반도로		충남고제16호 1998.02.23.	일부 폭원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601	소로1-601	◦ 일부 폭원 변경(30m → 31.6m)	◦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1개 차로 확장을 위해 도로 폭원 변경

당진시 고시 제2019-42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현황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2. 25.

당 진 시 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서해로 5091 외 8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 임 참 조			

○ **도로명주소(폐지) : 충청남도 당진시 동부로 143-14 외 13건**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붙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350-3820~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2. 25.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011. 12. 31.까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도로명변경 신청을 한 경우는 제외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02/25>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정미면 덕마리 430	정미면 서해로 5091	2019-02-25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서해로 가는 도로
2	신평면 거산리 358-14	신평면 서해로 6923-8	2019-02-25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서해로 가는 도로
3	송악읍 중흥리 산3-2	송악읍 복운로 144-33	2019-02-25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명칭 활용
4	수청동 2-1, 92-7	남부로 453-32 (수청동)	2019-02-25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당진군의 남쪽을 지나는 도로
5	대덕동 1880	대덕1로 100 (대덕동)	2019-02-25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법정리 명칭인 대덕리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6	대호지면 적서리 169-1	대호지면 선녀2길 115-15	2019-02-25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선녀를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7	고대면 성산리 261	고대면 원성산2길 61	2019-02-25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원성산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8	행정동 888-6	채원들길 49-18 (행정동)	2019-02-25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자연마을명칭인 채원들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9	신평면 남산리 5-1	신평면 세한대길 46-5	2019-02-25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2012-01-01	지역 대학 홍보 및 상징성 부여를 위하여 도로명 변경
	송악읍 가학리 612-1	송악읍 연방축길 36-11	2012-01-01	단순변경(기존건물 멸실 후 신축)	2012-01-01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시곡동 861-1	서해로 6091	2012-01-01	단순변경(기존건물 멸실 후 신축)	2012-01-01	서해로 가는 도로

<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 02/25 >

	지번주소(토지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비 고
1	수청동 877-1	동부로 143-14	건물멸실	
2	수청동 885	동부로 143-18	건물멸실	
3	수청동 878	동부로 143-53	건물멸실	
4	수청동 873-1	고실1길 100-14	건물멸실	
5	수청동 870	고실1길 100-13	건물멸실	
6	수청동 862	고실1길 106-25	건물멸실	
7	수청동 878	동부로 143-41	건물멸실	
8	수청동 877-1	동부로 143-14	건물멸실	
9	수청동 885	동부로 143-18	건물멸실	
10	수청동 878	동부로 143-53	건물멸실	
11	수청동 873-1	고실1길 100-14	건물멸실	
12	수청동 870	고실1길 100-13	건물멸실	
13	수청동 862	고실1길 106-25	건물멸실	
14	수청동 878	동부로 143-41	건물멸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 - 27호

「당진시 농업회의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농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당진시 농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농촌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농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를 위한 토론회·간담회 등 각종 회의 개최,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안 제3조)

나.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3농정책팀)

우편번호: 31763 주 소: 충남 당진시 구봉로 46

전 화: 041-350-4123 팩스번호: 041-350-4159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농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농업회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농촌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당진시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당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업회의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를 위한 토론회·간담회 등 각종 회의 개최
2.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업무위탁) 시장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회의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회의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의소는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당진시 농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